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록·보존·비치·열람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2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기록·보존·비치·열람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3
2. 부 칙	15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안자: 윤준병 의원 등 10인

2. 제안일: 2025. 12. 30.

3. 회부일: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기록·보존·비치·열람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6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u>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u>	제58조(벌칙)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
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
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9. ~ 19. (생략)

제60조(과태료) 신 설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삭 제>

<삭 제>

9. ~ 1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
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
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
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8조 및 제39조¹⁾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이하 “정관등”이라 함)를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 청구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가 제기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1) 「염업조합법」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보고·검사 위반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²⁾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경제형벌 합리화 정비 기준 >

- ① 법령입안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17개)에 속하는 경우
→ 원칙적 과태료 전환
- * 인허가, 신고, 보고, 행정상명령, 조사, 계획, 유사명칭, 교육, 강제보험, 게시, 보존, 통지, 인력배치, 인증, 검사, 표시, 토지출입 등
- ② 과태료 전환 시 원칙적으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되, 위반행위 가벌성, 벌금-과태료 간 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
- ③ 형사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유사입법례에 따라 과도한 수준 다소 완화하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자료 :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기록·보존·비치·열람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³⁾에 따르면 행정법규의 위반행

2)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3) 헌법재판소 판례(2018.8.30., 2017헌바368)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위에 대하여 벌칙의 유형 및 법정형의 결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이나,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조합의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수준의 위반행위는 그 성격상 행정질서벌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벌은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법의 벌칙 규정⁴⁾을 살펴보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부정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2024), p.582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친 형사처벌을 억제하여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4) 「영업조합법」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2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회(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4.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8.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하게 한 때(제58조제1호), 조합 정관 변경시 총회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제58조제2호), 법령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제58조제10호·제12호·제13호)등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실제적인 위반행위와,

정관등의 비치·열람·교부 의무위반, 조합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사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의 중대성 및 법익 침해의 경중에 따라 벌칙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먼저, 안 제58조제6호의 정관등 비치 의무 위반과 제58조제7호의 정관등 열람·교부 의무 위반규정을 살펴보면, 유사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서는 관련 의무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선주상호보협 조합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⁵⁾,

-
- 10.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 1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 1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배당한 때
 -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 15. 제46조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 16.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17.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 18.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19. 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 5) 벌금형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제73조에서 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비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관·의사록·조합원 명부·결산보고서의 열람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

현행법 과태료 규정⁶⁾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기 및 공고시 해태를 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58조제6호·제7호의 의무 위반사항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을 위반한 경미한 의무위반이라 보이므로 제58조제6호·제7호의 현행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6) 「염업조합법」

제60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 정관·의사록·조합원 명부 등 비치 의무 관련 유사입법례7)>

법률	제58조제6호의 정관등 비치 의무, 제58조제7호의 정관등 열람·교부 의무 규정	
	근거 규정 유무	벌칙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	×
「수산업협동조합법」	○ (결산보고서 비치 의무, 정관 등은 열람 의무 규정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조합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으로, 안 제58조제8호의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 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⁸⁾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⁹⁾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7) [참고 2] 참조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1조(과태료) ①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부과하고 있으나¹⁰⁾, 「수산업협동조합법」¹¹⁾, 「산림조합법」¹²⁾은 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비치 의무와 더불어 결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청구 의무 위반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상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에 관한 벌칙

「보험업법」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해양수산부장관 인가사항의 미이행, 조합 재산의 무단 사용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도 모두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2) 「산림조합법」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규정을 농협 및 수협 등과 다르게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법령 간 형벌의 형평성과 균형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조합의 재무상태 파악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공개제도인 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비치 의무와 회계 관련 열람·사본 교부 의무가 개정안에 따라 각각 행정형벌과 과태료로 부과되게 되는데, 양자가 위반의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관·의사록·조합원 명부 등 비치 의무 관련 유사입법례13)>

법률	결산보고서 제출·비치 및 열람 관련 규정	
	결산보고서 제출·비치	결산·회계 관련 열람
「농업협동조합법」 1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규정 없음
「수산업협동조합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조합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염업조합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참고 2] 참조

14)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

□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종전 벌금형의 상한은 3천만원이었으나 이를 1,000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바,

유사입법례 수준을 참고하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재 방안으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과 개정안은 모두 형벌과 과태료의 대상을 ‘임직원’ 또는 청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과 직원은 책임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유사입법례에서 일정한 지위에 책임을 부담하는 자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임.

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유사입법례 15) 벌금 및 과태료 상한액>

법률	정관등 비치	정관등 열람·교부	결산보고서 제출·비치	결산·회계 관련 열람
「농업협동조합법」	-	-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수산업협동조합법」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산림조합법」	-	-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전주상호보협조합법」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염업조합법」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벌금 3,0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15) [참고 2] 참조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⁶⁾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⁷⁾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⁸⁾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⁹⁾.

16)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8)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1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1조(과태료) ①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보험업법」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

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